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1123
----------	-------

제안연월일 : 2021. 6.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하영제의원	2020.9.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0.11.17.자로 직접 회부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6.)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7.)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22.)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1.6.22.) 상정
	민형배의원	2020.1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0.11.23.자로 직접 회부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6.)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7.)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22.)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1.6.22.) 상정
	정청래의원	2021.5.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6.16.자로 직접 회부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6.) 상정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7.)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22.)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 위원회(2021.6.22.) 상정
	강병원의원	2021.5.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6.16.자로 직접 회부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6.)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7.)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22.)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 위원회(2021.6.22.) 상정
	박완수의원	2021.6.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6.16.자로 직접 회부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6.)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7.)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22.)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 위원회(2021.6.22.) 상정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2021.5.2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6.16.자로 직접 회부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6.)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7.)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22.)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 위원회(2021.6.22.) 상정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	2020.6.2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9.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6.)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7.)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22.)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1.6.22.) 상정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2021.6.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1.6.16.자로 직접 회부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6.)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17.)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1.6.22.)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1.6.22.) 상정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6.22.)는 위 8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1.6.23.)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들어 대체휴일의 도입이나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휴일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휴일은 국경일, 1월 1일, 설날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함(안 제3조).

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같은 조 제8호의 기독교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